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23-13호

「상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 22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조례안 예고

1. 조례명

- 가. 상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- 나. 상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

2. 조례별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

가. 상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1) 제정이유

상주시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,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2) 주요내용

- 가.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
나. 스포츠클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
다.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및 범위(안 제4조)

나. 상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

1) 제정이유

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9제6항 및 제7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, 상주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·지원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2) 주요내용

가. 상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나. 관광진흥사업의 추진 및 지원 (안 제4조~제5조)

다. 재정 지원 제외(안 제6조)

라. 업무의 위탁(안 제7조)

마. 관광약자 관광활동 수립·시행·대상시설·조성사업
(안 제8조~제10조)

바. 관광협의회 설립(안 제12조~제14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5월 30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제·개정 (안)	수 정 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: jajaja4400@korea.kr

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
3) 팩 스: 054-535-9854 (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(전화: 054-537-7846)에
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의회
홈페이지(<https://www.sangjucouncil.go.kr> → 의회소식 → 공지사항)에
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: 상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견	비고

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: 상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견	비고